

#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19(수)  
산업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2.26.

나. 제안자 : 이한구, 안병배, 조영홍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2.26.

라. 상정일자 : 2014. 3.17(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한구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
- 심사내용 : 질의 및 토론
-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,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
-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지원 사업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위원회의 설치·기능·구성·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- 구조고도화사업 촉진과 관련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위원회 회의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- 구조고도화사업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
- 지식산업센터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을 규정함(안 제16조)
- 구조고도화사업 촉진과 관련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-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」은 관내에 소재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임.
-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여년에 달하면서 가동된 지 20년이 넘는 산업단지가 급증하는 ‘산업단지 고령화’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, 80년대 이전에 착공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66개소에 면적은 372km<sup>2</sup>로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.6%를 차지하고 있음.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주안·부평·남동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3개소 전부와 일반산업단지 7개소 중 인천기계산업단지,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2개소에 면적은 약 12.8km<sup>2</sup>로 68.4%를 차지하고 있음.
- 과거 60~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과

투자가 부족하여 제조시설 중심의 공간배치로 골뚝공장, 회색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또한 대다수의 노후된 산업단지는 협소한 진입로와 교통정체, 주차공간 부족,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, 문화·복지·체육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근로자 교육시설을 도입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한, 경제 활성화로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 촉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재정 확충 방안과 운영 방법 등 여러 방면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“노후”를 의미하는 정의가 없는데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편가? ⇒ 기간을 정하면 운영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규칙으로 정할 것 임.
- 구조고도화 촉진 사업의 지원 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- 첨단산업 등 집약업체에 대한 구조고도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
##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허인환·이한구·김영분·김정현·안병배 의원

#### 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)

○ 수정사항 : 안 제9조제3항을 “삭제”한다.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## 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 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  
3.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“삭제”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9조(회의)</b>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</p> <p>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<u>위원장은 표결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</u></p>	<p><b>제9조(회의)</b>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현행과 같음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삭제)</p>

##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산업단지"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·개발된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.
2. "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"이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2조 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.
3. "산업집적기반시설"이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, 기업지원시설, 기술 인력의 교육·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4. "산업기반시설"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, 교통·통신시설, 에너지시설,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.
5. "지식산업센터"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 제2조제13호의 다층형 복합건축물을 말한다.
6. "사업시행자"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, 산업집적기반시설,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,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구조고도화사업)**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사업
2.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
3.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
4. 산업단지과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
5. 기업·연구소·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
6.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
7.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·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위원회 설치)**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
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 있는 공무원
  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  3.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
  4.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-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 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의의 비공개 등)**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
**제12조(분과위원회)**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13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
2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4.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14조(수당)**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사업의 지원)**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지식산업센터의 확산)** 시장은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입지지원)** 시장은 제5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8조(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